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4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최형두

주호영 • 이인선 • 고동진

서미화 · 성일종 · 한지아

김 건 · 백종헌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외대상에서 삭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을 "기준, 제3항에 따른 인건비 일부의 지원"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한 도 내에서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
한 지원) ①・② (생 략)	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
	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그 인
	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③</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	<u>4</u>
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u>기준</u>	<u>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3항에 따른 인건비 일부의 지
으로 정한다.	<u>원</u>